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나429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재가소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069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0나4299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소3065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10. 21.

판결선고 2021. 12. 2.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소3065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67,3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1)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피고와의 사이에 2019. 7. 27.부터 2020. 7.
23.까지 위 화물차에 관하여 7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험료로 합계
8,437,060원을 지급하였다.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 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단체의 기준단가표에 의하면 위 보험기간 동안의 원고의 보험료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
합계 1,969,715원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로
합계 8,437,06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6,467,345원을 부당히 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기준단가표에 기재된 금액대로 위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7-77조의2(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기준)에 따라 원고의 2018. 5. 21.부터 2019. 9. 18.까지
사이의 교통법규(안전운전의무) 위반 1회, 교통사고 5회 등을 보험료 할증 요인으로 반영하고 원고와
유사한 정도의 사고 위험도를 가진 보험가입자들의 손해율에 따라 기본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천석, 판사 김영환, 판사 조진용

- 1) 제1심판결 청구취지란의 청구금액 ‘5,361,635원’은 ‘6,510,748원’의 오기로 보인다.
- 2) 구체적인 계약일자, 보험기간 및 보험료는 다음의 표와 같다. 순번 계약일자 보험기간 보험료 담보 및 가입금액
1 2019. 7. 24. 2019. 7. 27. ~ 2019. 8. 26. 1,099,690원 대인배상 I 2 2019. 8. 26. 2019. 8. 26. ~ 2019. 9. 25. 811,360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3 2019. 9. 24. 2019. 9. 25. ~ 2019. 11. 24. 1,082,450원 대인배상 II 4 2019. 11. 13. 2019. 11. 24. ~ 2020. 1. 23. 1,531,690원 - 무한
5 2020. 1. 15. 2020. 1. 23. ~ 2020. 3. 23. 1,531,690원 대물배상
6 2020. 3. 18. 2020. 3. 23. ~ 2020. 5. 23. 1,165,020원 - 1억
7 2020. 5. 13. 2020. 5. 23. ~ 2020. 7. 23. 1,215,160원